

의안번호	221145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7.22.
추계번호	25E3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자녀수별 추가공제 적용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1조 4,794억원, 2029년 5조 6,640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7조 8,692억원(연평균 4조 4,673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 (안 제126조의2①,②,⑩)	-14,794	-52,688	-54,571	-56,640	-178,692	-44,673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의 항목별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6조의2제1항, 제2항, 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확대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의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값¹⁾ * 공제한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공제대상금액: 현행 공제대상금액 + 자녀수별 추가공제** ** 부양자녀 1명: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금액 × 10%, 부양자녀 2명: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금액 × 20%, 부양자녀 3명 이상: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금액 × 25% * 공제한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자녀수별 추가공제(50/100/150만원)** ** 부양자녀: 1명 50만원, 2명 100만원, 3명 이상 150만원

1) 공제대상금액 = $\sum$ 공제항목별 사용액금액(총급여의 25% 초과분) $i \times$ 공제율 i = (신용카드 사용분 $\times 15\%$) + (현금영수증 사용분 $\times 30\%$) + (직불·체크카드 사용분 $\times 30\%$) + (전통시장 사용분 $\times 40\%$) + (대중교통 사용분 $\times 40\%$) +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 $\times 3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6조의2제1항, 제2항, 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2029년 동안 발생하며, 자녀수(18세 미만 부양자녀)별 공제대상 금액 및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
- 18세미만 부양자녀 수별 추가공제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 공제항목별 사용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한 후,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금액 변화율을 산출하여 이를 활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감면실적) 2024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1,183억원임¹⁾

-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단위: 억원, %)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잠정
조세지출액	21,176 (14.2)	22,553 (6.5)	24,698 (9.5)	31,882 (29.1)	31,675 (-0.6)	39,458 (24.6)	41,183 (4.4)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공제한도 확대 등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치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일몰 연장) 2020년(2019년 귀속)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1) ① [표 2] 기준 ① 2018년(2017년 귀속)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
- ② 2019년(2018년 귀속)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
- ③ 2021년(2020년 귀속)에는 2020년 3월과 4~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80%, 80%의 공제율을 적용(기존 15~40%)하고,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
- ④ 2022년(2021년 귀속)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15~40%)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공제율 추가 적용
- ⑤ 2023년(2022년 귀속)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 추가공제 적용
- ⑥ 2024년(2023년 귀속)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 추가,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 2023년(4~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 2023년(1~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로 한시 상향조정

-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재 2024년(2023년 귀속) 조세지출 실적치(잠정치)까지 공개되었으나, 2021년(2020년 귀속)과 2022년(2021년 귀속)은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제도변화가 반영된 실적치이므로, 제도변화가 미미하였던 2020년(2019년 귀속) 조세지출 실적치 이용
- 2020년 조세지출 실적에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하여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조정되어 적용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제외하고 추계

[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전망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 (A)	2.3	1.9	2.0	2.0	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B)	4.2	4.2	4.2	4.2	4.2
합계 (A+B)	6.5	6.1	6.2	6.2	6.2

주: 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25.4.)의 전망치 사용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은 2024년부터 2018~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4.2%) 사용

- (부양자녀수별 공제한도 확대 등) 2024년(2023년 귀속) 재정패널조사 원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변화분을 추정 한 후, 해당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추정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집계자료만을 제공하므로,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3년 귀속)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
 - 먼저,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총급여규모별로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변화율을 산출하고,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규모별 소득공제금액 실적치에 해당 변화율을 곱해 소득공제금액의 변화분 추정치를 산출한 후, 해당 변화분에 한계세율과 적용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기준연도(2023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18세 미만 인구 증가율(통계청, 장래인구추계)²⁾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18세미만 인구 증가율(전년대비, %): (2024) -2.9, (2025) -3.5, (2026) -4.0 (2027) -3.5 (2028) -3.3

(3) 추계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2029년 동안 총 17조 8,692억원(연평균 4조 4,6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2029년 3년간 12조 2,7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3년(귀속연도) 기준 1조 5,7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표 4] 참조), 이후 기간에 대하여 18세미만 인구 감소율 적용 시 2026~2029년 4년간 5조 5,9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부양자녀 수별 추가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⁵⁾ (%)	세수효과 (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1인당 공제금액	1인당 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	C=B/A	D=C×(1+E%)	E	F=D-C	G	H=-(F×G)×A
합계	9,679,257	27,865,778	288	-	-	-	-	-15,785
1천만 이하	-	-		0	-	-	-	-
1.5천만 이하	2,876	936	0.3	0.5	47.1	0.15	6	0
2천만 이하	146,369	221,015	1.5	2.2	44.0	0.66	6	-58
3천만 이하	1,445,541	3,428,868	2.4	3.5	46.5	1.10	6	-956
4천만 이하	1,676,391	4,440,772	2.6	3.7	38.7	1.03	15	-2,579
4.5천만 이하	795,273	2,279,760	2.9	3.9	34.4	0.99	15	-1,176
5천만 이하	735,067	2,202,938	3.0	4.0	32.8	0.98	15	-1,083
6천만 이하	1,250,479	3,938,759	3.1	4.3	36.7	1.15	15	-2,166
8천만 이하	1,666,854	5,262,051	3.2	4.2	34.3	1.08	15	-2,711
1억 이하	958,636	2,931,605	3.1	4.1	33.4	1.02	24	-2,352
2억 이하	929,578	2,932,009	3.2	3.9	24.3	0.77	35	-2,492
3억 이하	56,484	178,564	3.2	3.9	24.3	0.77	38	-165
5억 이하	13,080	40,539	3.1	3.9	24.3	0.75	40	-39
10억 이하	2,300	6,987	3.0	3.8	24.3	0.74	42	-7
10억 초과	329	975	3.0	3.7	24.3	0.72	45	-1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

2) 현행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2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5)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9년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일몰 연장		-38,490	-40,869	-43,396	-122,755	-40,918
자녀수별 공제한도 확대 등	-14,794	-14,198	-13,702	-13,244	-55,937	-13,984
합계	-14,794	-52,688	-54,571	-56,640	-178,692	-44,673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의 항목별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